



시흥하중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

■ 공급대상 : A1블록 600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00세대 (전용면적 55㎡)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홍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회공급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VIII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린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시흥하중지구 A1블록 600세대 중 40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00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3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 기한,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820002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055.0000A, 055.0000B, 055.0000C)로 신청해야 하며,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타입)이라도 A, AH로 세부평형이 구분됩니다. (각 주택형(타입)별 세부평형 및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 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경우 선호순위 신청 후 배정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

■ 시흥하중 A1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시흥하중 A1블록은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단지입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6.05.08.(금) 10:00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시흥하중 A1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6.05.08.(금) ~ 05.09.(토) 양일간 선공개 합니다.

- [중요]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시흥하중 A1블록 55A 세부평형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5AH, 55B, 55C 세부평형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대 상	구 분	방문 일정	주 소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만 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26.05.08.(금) ~ 05.09.(토) (10:00~17: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31-8077-7989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26.05.10.(일) ~ 05.17.(일) (10:00~17:00)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내 실제 건설세대 촬영 영상 및 세부평형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hj-a1.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 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에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홍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시흥시 1년 이상(2025.04.30. 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급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5.04.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2) '25.04.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계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세대원 전원을 말한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납입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의거 거주 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 의무	거주 의무 개시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급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과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공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규신청자)	전자				현장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포기							
4.30. (목)	5.18.(월) 10:00 ~ 5.19.(화) 17:00	5.21.(목) 14:00 이후	5.26.(화) 10:00 ~ 5.27.(수) 17:00	6.1.(월) 10:00 ~ 6.2.(화) 17:00	6.11.(목) 14:00 이후	6.18.(목)~6.21.(일) (10:00~16:00)	9.16.(수) 10:00 ~9.17.(목) 16:00	9.28.(월)~9.29.(화) (10:00~16:00)	9.30.(수)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LH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rts.molit.go.kr)	LH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선호 주택형(타입)이 아닐 경우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포기(인증서 필요)하여야 하며,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본청약 신청접수 및 청약통장 사용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6.09.28.(월)~09.29.(화)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원하는 분은 현장 계약체결기간에 LH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에 'VI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종전 통상(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4.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종전 통상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공사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시흥하중 A1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보증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상세자료 : 주택도시보증(hnh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시흥하중 A1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보증기금 용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 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해당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해당제한 제한됩니다.

※ 해당제한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해당제한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에 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적격 가입기간과 납입예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소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시용하중 A1블록 60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25층 4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400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 세대수				최고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입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사전청약 당첨자					분청약						
A1	055.0000A	55A	합 계						600	196	204	200	25	24	'29.03.			
			55A	55.8000	24.9892	12.2387	44.5546	137.5825	30.47	41.0490	533	172	180	181		19	14	
			55AH	55.9500	25.0564	12.2716	44.6744	137.9524	30.57	41.1593						25	9	
			055.0000B	55B	55.7400	24.9624	12.2256	44.5067	137.4347	27.59	41.0049	42	15	15		12	25	-
			055.0000C	55C	55.8500	25.0116	12.2497	44.5946	137.7059	27.59	41.0858	25	9	9		7	25	1

-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세부평형 선택은 불가능합니다.(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 * 상기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면적의 합계이며 실외기실, 발코니(다용도실) 면적을 포함합니다.(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초과분 면적 제외)
-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분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분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타입)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타입)별 신청접수 미달 시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신청해야 하며, 같은 주택형(타입)이라도 주택면적 차이로 인해 세부평형별 주택가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년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세부평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3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사전청약당첨자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5%	중도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보증)
					계약시	('28.08.10.)		입주시
055.0000A	55A	1층	기본형	397,240	19,862	79,448	242,930	55,000
			마이너스옵션	368,180	18,409	73,636	221,135	55,000
		2층	기본형	401,470	20,073	80,294	246,103	55,000
			마이너스옵션	372,410	18,620	74,482	224,308	55,000
		3층	기본형	409,920	20,496	81,984	252,440	55,000
			마이너스옵션	380,860	19,043	76,172	230,645	55,000
		4층	기본형	418,370	20,918	83,674	258,778	55,000
	마이너스옵션		389,310	19,465	77,862	236,983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422,600	21,130	84,520	261,950	55,000	
		마이너스옵션	393,540	19,677	78,708	240,155	55,000	
	55AH	1층	기본형	398,310	19,915	79,662	243,733	55,000
			마이너스옵션	369,171	18,458	73,834	221,879	55,000
		2층	기본형	402,550	20,127	80,510	246,913	55,000
			마이너스옵션	373,411	18,670	74,682	225,059	55,000
3층		기본형	411,020	20,551	82,204	253,265	55,000	
		마이너스옵션	381,881	19,094	76,376	231,411	55,000	
4층		기본형	419,500	20,975	83,900	259,625	55,000	
	마이너스옵션	390,361	19,518	78,072	237,771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423,740	21,187	84,748	262,805	55,000		
	마이너스옵션	394,601	19,730	78,920	240,951	55,000		

055.0000B	55B	5층~ 최상층	기본형	422,150	21,107	84,430	261,613	55,000
			마이너스옵션	393,121	19,656	78,624	239,841	55,000
055.0000C	55C	1층	기본형	397,600	19,880	79,520	243,200	55,000
			마이너스옵션	368,514	18,425	73,702	221,387	55,000
		2층	기본형	401,830	20,091	80,366	246,373	55,000
			마이너스옵션	372,744	18,637	74,548	224,559	55,000
		3층	기본형	410,290	20,514	82,058	252,718	55,000
			마이너스옵션	381,204	19,060	76,240	230,904	55,000
		4층	기본형	418,750	20,937	83,750	259,063	55,000
			마이너스옵션	389,664	19,483	77,932	237,249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22,980	21,149	84,596	262,235	55,000
			마이너스옵션	393,894	19,694	78,778	240,422	55,000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세부평형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8.01.10.)	('28.08.10.)		
055.0000A	55A	1층	기본형	397,240	39,724	39,724	39,724	223,068	55,000
			마이너스옵션	368,180	36,818	36,818	36,818	202,726	55,000
		2층	기본형	401,470	40,147	40,147	40,147	226,029	55,000
			마이너스옵션	372,410	37,241	37,241	37,241	205,687	55,000
		3층	기본형	409,920	40,992	40,992	40,992	231,944	55,000
			마이너스옵션	380,860	38,086	38,086	38,086	211,602	55,000
		4층	기본형	418,370	41,837	41,837	41,837	237,859	55,000
			마이너스옵션	389,310	38,931	38,931	38,931	217,517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22,600	42,260	42,260	42,260	240,820	55,000
			마이너스옵션	393,540	39,354	39,354	39,354	220,478	55,000
	55AH	1층	기본형	398,310	39,831	39,831	39,831	223,817	55,000
			마이너스옵션	369,171	36,917	36,917	36,917	203,420	55,000
		2층	기본형	402,550	40,255	40,255	40,255	226,785	55,000
			마이너스옵션	373,411	37,341	37,341	37,341	206,388	55,000
		3층	기본형	411,020	41,102	41,102	41,102	232,714	55,000
			마이너스옵션	381,881	38,188	38,188	38,188	212,317	55,000
4층	기본형	419,500	41,950	41,950	41,950	238,650	55,000		
	마이너스옵션	390,361	39,036	39,036	39,036	218,253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23,740	42,374	42,374	42,374	241,618	55,000		
	마이너스옵션	394,601	39,460	39,460	39,460	221,221	55,000		
055.0000B	55B	5층~ 최상층	기본형	422,150	42,215	42,215	42,215	240,505	55,000
			마이너스옵션	393,121	39,312	39,312	39,312	220,185	55,000
055.0000C	55C	1층	기본형	397,600	39,760	39,760	39,760	223,320	55,000
			마이너스옵션	368,514	36,851	36,851	36,851	202,961	55,000
		2층	기본형	401,830	40,183	40,183	40,183	226,281	55,000
			마이너스옵션	372,744	37,274	37,274	37,274	205,922	55,000
		3층	기본형	410,290	41,029	41,029	41,029	232,203	55,000
			마이너스옵션	381,204	38,120	38,120	38,120	211,844	55,000
		4층	기본형	418,750	41,875	41,875	41,875	238,125	55,000
			마이너스옵션	389,664	38,966	38,966	38,966	217,766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422,980	42,298	42,298	42,298	241,086	55,000
			마이너스옵션	393,894	39,389	39,389	39,389	220,727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세부평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세부평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건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세부평형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세부평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용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발코니출입문(DPW), 디지털도어록, 실외기실출입문(PD)	목제공틀, 욕실문틀 하부 씬,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PL창호(외부), 실외기실그릴창호
② 바닥	합판미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포셀린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현관창고·팬트리 세대단차함이 설치되는 경량벽체,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동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스피커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기구 및 기구(가스쿠포,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가스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욕실등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비상등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전동빨래건조대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통신단차함 세대분전반,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계량기류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불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및 실외기실 우수배관은 설치 되나, 타일마감이 되지 않아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증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급탕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는 내부 공사시 점검구설치 등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 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당해층 배기방식)를 시공하여야 하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불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 발생하는 법령 등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약약을 징구(제출하여야)합니다. (현장계약 장소에 양식 비치, 전자계약시 별도 안내)
- 가스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전기식 등으로 변경 시 발생하는 차액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실별 구분 가격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식당	드레스룸	알파룸
055.0000A	55A	기본공사비(A)	79,936	20,755	21,188	10,883	12,977	6,577	7,558
		확장공사비(B)	85,917	21,453	22,017	11,386	15,277	7,833	7,951
		계약자부담액(B-A)	5,981	699	829	504	2,300	1,257	393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084	594	705	428	1,955	1,068	334
055.0000B	55B	기본공사비(A)	79,308	21,175	20,539	10,821	12,765	6,478	7,530
		확장공사비(B)	85,206	21,886	21,347	11,322	14,998	7,732	7,922
		계약자부담액(B-A)	5,898	711	808	501	2,233	1,253	392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013	604	687	426	1,898	1,065	333
055.0000C	55C	기본공사비(A)	77,228	24,154	19,209	11,412	642	13,859	7,953
		확장공사비(B)	81,287	24,889	19,920	11,899	940	15,305	8,335
		계약자부담액(B-A)	4,059	735	711	487	298	1,445	383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3,450	625	604	414	253	1,228	325
055.0000D	55D	기본공사비(A)	76,885	24,046	19,123	11,361	642	13,796	7,918
		확장공사비(B)	80,936	24,778	19,832	11,847	940	15,240	8,299
		계약자부담액(B-A)	4,050	733	709	486	298	1,443	382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3,443	623	603	413	253	1,227	325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계'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액 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8.08.10.)	잔금 (입주시)
055.0000A	55A	기본형	5,981	500	2,000	3,481
		마이너스옵션	5,084	500	2,000	2,584
	55AH	기본형	5,898	500	2,000	3,398
		마이너스옵션	5,013	500	2,000	2,513
055.0000B	55B	기본형	4,059	500	2,000	1,559
		마이너스옵션	3,450	500	2,000	950
055.0000C	55C	기본형	4,050	500	2,000	1,550
		마이너스옵션	3,443	500	2,000	943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타입)	세부평형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8.01.10.)	중도금 2차 ('28.08.10.)	잔금 (입주시)
055.0000A	55A	기본형	5,981	1,000	1,000	1,000	2,981
		마이너스옵션	5,084	1,000	1,000	1,000	2,084
	55AH	기본형	5,898	1,000	1,000	1,000	2,898
		마이너스옵션	5,013	1,000	1,000	1,000	2,013
055.0000B	55B	기본형	4,059	1,000	1,000	1,000	1,059
		마이너스옵션	3,450	1,000	1,000	1,000	450
055.0000C	55C	기본형	4,050	1,000	1,000	1,000	1,050
		마이너스옵션	3,443	1,000	1,000	1,000	443

■ 공간선택(무상) 안내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타입)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펌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주택형(타입)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비고
	기본형	☑ 공간확장형	
055.0000A, 055.0000B, 055.0000C	침실2/알파룸 분리	침실2/알파룸 통합	기본형 또는 ☑ 공간확장형 중 1가지 선택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욕탕 등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특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펌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아래 선택품목에 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 시 유의사항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단위 : 천원]

세부 평형	구분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유의사항
				합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8.08.10.)	잔금 (입주시)	
55A, 55AH	공간선택	☑ [공간확장형] 침실2/알파룸 통합	침실2/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주방	☑-1 냉장고장+키친장(수납장+가전소물장)	미설치(가구없음)	2,264	113	452	1,699	☑-1, ☑-2, ☑-3 중 택 1
		☑-2 냉장고장(3도어)+키친장		1,813	90	362	1,361	
		☑-3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725	86	344	1,295	
		☑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529	76	304	1,149	☑ 선택 시 ☑-1, ☑-2 선택불가
		☑ 하부장 삭제(식기세척기 공간)		주방가구 하부장	선택 시 무상 제공			
		주방 가전	☑-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	MMA(주방가구상판)+도기질타입(주방벽체)+알반싱크수전+알반싱크볼(간접조명 미설치)	2,100	105	420	1,575
	☑-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톤)		3,696		184	738	2,774	☑-1, ☑-2 선택 시 ☑ 선택불가
	가구	☑-1 인덕션 2구+가스1구	가스쿡탑(3구)	630	31	126	473	☑-1, ☑-2 중 택 1
		☑-2 인덕션 3구		590	29	118	443	
	인테리어	☑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958	97	390	1,471	☑-1, ☑-2 중 택 1 * 드레스룸(경량벽체+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최상단하부명))
				☑-1 [침실1] 드레스룸	3,696	184	738	
		☑-2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4장)+선반장	7,337	366	1,466	5,505		
		☑-1 [침실2] 불박이장(여닫이장)+장식장	1,496	74	298	1,124	☑-1, ☑-2 중 택 1	
	인테리어	☑-2 [침실2/알파룸 통합] 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장식장	미설치	3,278	163	654	2,461	☑ 공간확장형 선택 시 ☑-1은 선택불가, ☑-2는 선택가능
		☑ [거실]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341	17	68	256
		☑ [거실특화] 거실, 현관, 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4	216	866	3,252	

구분	구분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유의사항
				합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8.01.10)	중도금 2차 (28.03.10)	잔금 (양부시)	
55B, 55C	공간선택	A [공간확장형] 침실2/알파룸 통합	침실2/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B-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장+가전소물장)	미설치(가구없음)	2,264	113	452	1,699		
	주방	B-2 냉장고장(3도어)+키큰장	미설치(가구없음)	1,813	90	362	1,361	B-1, B-2, B-3 중 택 1	
		B-3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	1,725	86	344	1,295		
		C 아일랜드시탁(MMA)	미설치	1,661	83	332	1,246	C 선택 시 A-1, A-2 선택불가	
		D 하부장 삭제(식기세척기 공간)	주방가구 하부장	선택 시 무상 제공					마감미설치(측면·상부·후면·바닥) *식기세척기 제공이 아님
	주방 가전	E-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	MMA(주방가구상판)+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2,100	105	420	1,575	E-1, E-2 중 택 1	
		E-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아일랜드시탁(엔지니어드스톤)	간접조명 미설치	4,048	202	808	3,038	E-1, E-2 선택 시 C 선택불가	
		F-1 인덕션 2구+가스1구	가스쿡탑(3구)	630	31	126	473		
		F-2 인덕션 3구	가스쿡탑(3구)	590	29	118	443	F-1, F-2 중 택 1	
가구	G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958	97	390	1,471			
	H-1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2,893	144	578	2,171	H-1, H-2 중 택 1		
	H-2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선반장	미설치	5,973	298	1,194	4,481	* 드레스룸(경량벽체+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최상단하부조명))		
	H-1 [침실2] 불박이장(여닫이장)+장식장	미설치	1,496	74	298	1,124	H-1, H-2 중 택 1		
인테리어	H-2 [침실2] 알파룸 통합	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장식장	3,278	163	654	2,461	*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H-1은 선택불가, H-2는 선택가능		
	I [거실]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330	16	66	248			
	J [거실특화] 거실, 현관, 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971	198	794	2,979			
	K-1 [조명특화] 거실(중앙직부등)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	거실(중앙직부등) *거실 디밍 제어 가능	1,661	83	332	1,246	K-1, K-2 중 택 1		
욕실 자재	K-2 [조명특화] 거실(다운라이트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L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29	116	435	욕실1에 설치		
시스템 에어컨	M-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거실+침실1)	4,710	235	942	3,533			
	M-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냉매배관(거실+침실1)	8,335	416	1,666	6,253	M-1, M-2, M-3 중 택 1		
	M-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냉매배관(거실+침실1)	6,975	348	1,394	5,233	* M-3은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기타	N 침실2 경량벽체 꺾음 시공	경량벽체 일자 시공	77	3	14	60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단위 : 천원]

세부 평형	구분	선택품목	기본형	선택 시 납부조건					유의사항
				합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28.01.10)	중도금 2차 (28.03.10)	잔금 (양부시)	
55A, 55AH	공간선택	A [공간확장형] 침실2/알파룸 통합	침실2/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B-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장+가전소물장)	미설치(가구없음)	2,264	226	226	226	1,586	
	주방	B-2 냉장고장(3도어)+키큰장	미설치(가구없음)	1,813	181	181	181	1,270	B-1, B-2, B-3 중 택 1
		B-3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미설치	1,725	172	172	172	1,209	
		C 아일랜드시탁(MMA)	미설치	1,529	152	152	152	1,073	C 선택 시 A-1, A-2 선택불가
		D 하부장 삭제(식기세척기 공간)	주방가구 하부장	선택 시 무상 제공					마감미설치(측면·상부·후면·바닥) *식기세척기 제공이 아님
	주방 가전	E-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	MMA(주방가구상판)+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2,100	210	210	210	1,470	E-1, E-2 중 택 1
		E-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아일랜드시탁(엔지니어드스톤)	간접조명 미설치	3,696	369	369	369	2,589	E-1, E-2 선택 시 C 선택불가
		F-1 인덕션 2구+가스1구	가스쿡탑(3구)	630	63	63	63	441	
		F-2 인덕션 3구	가스쿡탑(3구)	590	59	59	59	413	F-1, F-2 중 택 1
가구	G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958	195	195	195	1,373		
	H-1 [침실1] 드레스룸	미설치	3,696	369	369	369	2,589	H-1, H-2 중 택 1	
	H-2 [침실1] 드레스룸+불박이장(슬라이딩형4장)+선반장	미설치	7,337	733	733	733	5,138	* 드레스룸(경량벽체+슬라이딩도어 +시스템선반(최상단하부조명))	
	H-1 [침실2] 불박이장(여닫이장)+장식장	미설치	1,496	149	149	149	1,049	H-1, H-2 중 택 1	
인테리어	H-2 [침실2] 알파룸 통합	불박이장(슬라이딩형3장)+장식장	3,278	327	327	327	2,297	*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H-1은 선택불가, H-2는 선택가능	
	I [거실]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341	34	34	34	239		
	J [거실특화] 거실, 현관, 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4,334	433	433	433	3,035		
	K-1 [조명특화] 거실(중앙직부등)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	거실(중앙직부등) *거실 디밍 제어 가능	1,661	166	166	166	1,163	K-1, K-2 중 택 1	
욕실 자재	K-2 [조명특화] 거실(다운라이트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엠티등(거실, 침실)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L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욕실1에 설치	
시스템 에어컨	M-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거실+침실1)	4,710	471	471	471	3,297		
	M-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냉매배관(거실+침실1)	8,335	833	833	833	5,836	M-1, M-2, M-3 중 택 1	
	M-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냉매배관(거실+침실1)	6,975	697	697	697	4,884	* M-3은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기타	N 침실2 경량벽체 꺾음 시공	경량벽체 일자 시공	77	7	7	7	56		

55B, 55C	공간선택	A [공간확장형] 침실2/알파룸 통합	침실2/알파룸 분리	선택 시 무상 제공					
	주방	1-1 냉장고장+키친장(수납장+가전소울장)	미설치(가구없음)	2,264	226	226	226	1,586	1-1, 1-2, 1-3 중 택 1
		1-2 냉장고장(3도어)+키친장		1,813	181	181	181	1,270	
		1-3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725	172	172	172	1,209	
		2 아일랜드식탁(MMA)	미설치	1,661	166	166	166	1,163	2 선택 시 4-1, 4-2 선택불가
		3 하부장 삭제(식기세척기 공간)		주방가구 하부장	선택 시 무상 제공				
		주방 가전	4-1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	MMA(주방가구상판)+ 도기질타일(주방벽체)+ 일반싱크수전+일반싱크볼 (간접조명 미설치)	2,100	210	210	210	1,470
	4-2 [주방특화]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디자인형 싱크수전+사각 싱크볼+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설치+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스톤)		4,048		404	404	404	2,836	4-1, 4-2 선택 시 2 선택불가
	가구	5-1 인덕션 2구+가스1구	가스쿡탑(3구)	630	63	63	63	441	5-1, 5-2 중 택 1
		5-2 인덕션 3구		590	59	59	59	413	
	인테리어	6 현관 중문(3연동)	미설치	1,958	195	195	195	1,373	7-1, 7-2 중 택 1 *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 (최상단하부조명))
		7-1 [침실1] 드레스룸		2,893	289	289	289	2,026	
		7-2 [침실1] 드레스룸+볼락이장(슬라이딩형3장)+선반장	5,973	597	597	597	4,182		
		8-1 [침실2] 볼락이장(여닫이장)+장식장	1,496	149	149	149	1,049		
	욕실자재	9-2 [침실2/알파룸 통합] 볼락이장(슬라이딩형3장)+장식장	미설치	3,278	327	327	327	2,297	8-1, 8-2 중 택 1 *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8-1은 선택불가, 8-2는 선택가능
		9 [거실] 아트월 광폭타일(600*1200)		800*400	330	33	33	33	231
	욕실자재	10 [거실특화] 거실, 현관, 복도 벽체 시트판넬	실크벽지	3,971	397	397	397	2,780	11-1, 11-2 중 택 1 * 거실 및 침실 디밍(조명밝기), 색온도 5단계 조절 가능
		11-1 [조명특화] 거실(중앙직부등)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엣지등(거실, 침실)	거실(중앙직부등) *거실 디밍 제어 가능	1,661	166	166	166	1,163	
		11-2 [조명특화] 거실(다우라이트 8EA) 간접조명(우물천장 4면, 신발장 하부)+포인트조명(아트월)+엣지등(거실, 침실)		2,816	281	281	281	1,973	
	시스템 에어컨	12 기능성 틸트팬(6T)	강화합판마루	선택 시 무상 제공					
13 욕실 다기능팬		일반 욕실배기팬	580	58	58	58	406	욕실1에 설치	
14-1 거실+침실1(실내기 2대)		냉매배관(거실+침실1)	4,455	445	445	445	3,120	14-1, 14-2, 14-3 중 택 1 * 14-3은 A 공간확장형 선택 시 선택가능	
14-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실내기 4대)	8,000		800	800	800	5,600			
14-3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실내기 3대)	6,715		671	671	671	4,702			
기타	15 [침실2] 경량벽체 꺾음 시공	경량벽체 일자 시공	77	7	7	7	56		
	16 팬트리 시스템선반	공간제공(도어설치), 선반 미설치	649	64	64	64	457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 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격(36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문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보증)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도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보증) 용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단, 주택도시보증)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주택도시보증)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율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을,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이율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세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시흥하중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4.3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100%	· 공고일 현재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5.04.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흥시 거주 ('25.04.3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수도권)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06.1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상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제1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주 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body> </table>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건 물</th> <th>건축물 종류</th> <th>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h> </tr> </thead> <tbody> <tr> <td>단독주택</td> <td></td> </tr> </tbody> </table>	건 물	건축물 종류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단독주택	
건 물	건축물 종류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단독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 설 물</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h> </tr> </thead> <tbody> <tr> <td>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건축물 종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 설 물		건축물 종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 설 물</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h> </tr> </thead> <tbody> <tr> <td>시 설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시 설 물	건축물 종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 설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 설 물		건축물 종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 설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임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 금융자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③ 기타자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⑤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유통성 한도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론 대출액을 소명할 경우 부채로 인정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② 금융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③ 기타자산	⑤를 차감한 금액이	⑤를 차감한 금액이	
④ 자동차	397,000천원 이하	431,000천원 이하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7>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 배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추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 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아니함.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통-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모춘치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에업, 양잠업, 조양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호처 등

III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목)]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 제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8.)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4.30.)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시흥시 1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던 경우 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해당지역 전입일~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8.)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시흥시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대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04.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5.18.(월) 10:00 ~ 05.19.(화)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분청약 신청 포기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2순위→3순위)으로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을 확인 후, 분청약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분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분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처리되지 않으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 및 타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발표 일정 : 2026.05.21.(목) 14: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조회)

- 분청약 신청 포기 기간 : 2026.05.26.(화) 10:00 ~ 5.27.(수) 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조회 → 포기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분청약 신청을 하여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분청약(신규신청자)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주택형 확인사항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타입)	발코니 확장 여부
시흥하중	A1	55	055.0000A, 055.0000B, 055.0000C	발코니 확장형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5.18.(월) ~ 05.19.(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5.18.(월) ~ 05.19.(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한 경우,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p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호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당첨시 당첨자발표일[2026.06.11.(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4.30. ~ 2026.04.30.에 속한 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승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시흥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부터 1년 이내(2027.04.30.)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예비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급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급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급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일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위 : 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급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급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 및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시흥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급회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13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 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 공급량의 6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 태아(임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④ 0명	0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0점) 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입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동호추첨

- 동·호수는 분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분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타입) 내에서 세부평형별·동별·층별·향별·축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06.1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 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 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 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해당점 제한 및 당첨자 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타입)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 (2026.05.18.(월)~05.19.(화))에 신청하여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 (2026.05.18.(월)~05.19.(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한 경우,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7.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타입)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타입)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제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 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타입)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기타지역(시흥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개별 세부평형 선택 불가)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2순위→3순위)으로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처리되지 않으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 및 타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자는 각 주택형(타입)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6.06.02.(화) 오후 8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공공결재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형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포기 시 “포기 신청” 필요

• 본청약(신규신청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타입)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5.18.(10:00) ~ 2026.05.19.(17:00), (본청약 신청자) 2026.06.01.(10:00) ~ 2026.06.02.(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청약 신청 포기 기간 (2026.05.26.(화) 10:00 ~ 05.27.(수) 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하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시흥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시흥시)", 과거 1년 미만 시흥시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 (**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혼부부 특별공급용)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공공분양 등·호, 당첨자 선정)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 추첨 일시 : 2026년 5월 21일(목) 11:00
- 추첨 내용 ①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 공공분양 등·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11:00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등·호수
 -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등·호수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정, 입주자선정 및 등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연락처 : 031-8077-798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회차별 참관인원(6인)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전자계약	현장계약
2026.06.11.(목)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26.06.18.(목)~06.21.(일) 10:00~16:00 LH 시흥하중 A1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2026.09.16.(수) 10:00 ~ 09.17.(목) 16:00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2026.09.28.(월)~09.29.(화) 10:00~16: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2026.09.30.(수) 10:00~16:00 LH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첨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등호, 계약체결일기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된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6.06.18.~06.21.)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사전청약공고일(2021.11.18.)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선택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개명한 경우 개명 전, 후 모두 발급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필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선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선택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⑩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포함
⑪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선택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⑫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 시 개명전·후 모두발급)
⑭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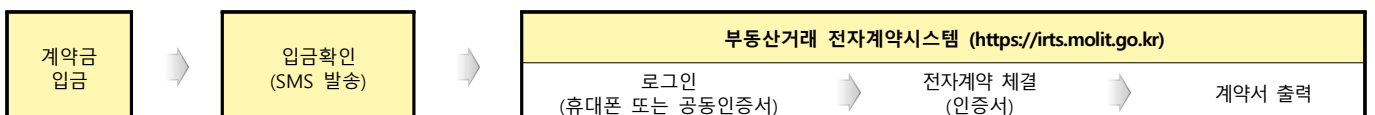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현상수납 불가) * 주택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환(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본인 계약 시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td> <td>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td> </tr> <tr> <td>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td> <td>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본인도장(인감도장외에도 가능) </td> </tr> <tr> <td>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td> <td>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본인도장(인감도장외에도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본인도장(인감도장외에도 가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고령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마감시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향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사이버 건보주택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엔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을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1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자후불제 대출안내(중도금 대출 협약체결에 따라 대출이 실행 될 경우 이자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자는 공사가 대납하되, 공사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 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현행 연 7.5%, 변동 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 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현행 연 7.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금은 동시에 수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나이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과 다목적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들 경사로(기성품)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월패드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야간 센서등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낮이조절 세면기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최초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6.09.30.)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청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국토교통부고시(2025-891호, 2025.12.30.)로 승인고시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변경, 매장유산, 오염토양발생 등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사업준공 등 추진 일정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에는 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반경 약 1.5km 거리에 준공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며, 북측으로 반경 약 2.5km 거리에 매화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서측으로 시흥대로(국도39호선), 하중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북측으로 마유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고, 연성IC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한 시흥시청역은 현재 서해선이 개통되어 있으며, 월곶-판교선(경강선), 신안산선은 개통예정으로 총 3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서측으로 갯골생태공원, 북동측으로 관곡지, 연꽃데마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홍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지(1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고 해당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은 제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공원부지 내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외 도로의 신설·확장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지자체 등 협의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서측에 시흥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여 있으나, 향후 증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위치 및 규모 등은 관련 계획, 인·허가 변경, 제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시흥대로 등)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 일부 구간에 방음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업무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의 용지는 관계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시 상담창구 및 계약 전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 계획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전체 면적의 약 30% 가량 문화재 조사대상지로서, 문화재 조사 진행 중 유구 발견 등에 따라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A-1, A-2, A-3, A-4BL에 한해 단지내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공원녹지 조경공사,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인데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관계기관 협의 결과,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신설학교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남측에 위치한 하중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까지 반경 약 600m(도보이용시 약 700m) 거리에 위치합니다. 학생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접 도로 및 진출입구에 노상 시설물(전력PAD, 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은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계획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시 대기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단지 공원·녹지·도로와 인접한 주거동은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공원·녹지 등과 인접한 주거동은 소음, 악취, 벌레 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도로와 인접한 동은 일부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는 지구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흥하중지구 내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30년 예정) 증설 및 신설계획에 따라 본 단지에서 발생한 오수는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하수처리장 운영 이후 임시 오수처리시설 철거로 인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외의 조경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보행자도로) 간 레벨차이로 인한 단차발생 시 아파트 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조경식, 옹벽 또는 법면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의 담장 및 구조물은 추후 토목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마감처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도로 및 진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서측에는 저류지를 포함한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서측에는 공동주택용지(A-2BL)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남동측에는 주차장·공공청사·종교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도로·공원·녹지·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일체는 지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입주 후까지 완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LH 및 시공사에 각종 이의제기 및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주변 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공원·녹지 조경공사 등 진행에 따라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및 교통장애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외의 조경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북서측에 인접된 A-2BL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보행통로란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2층은 2.7m, 지하3층은 2.3m입니다.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동·호 라인별 1층 바닥 높이가 상이합니다.
- 아파트 동·호 라인별로 출입가능한 지하주차장 층수가 상이합니다.
 - * 101동 전라인, 102동 1~6호라인, 103동 1~6호라인, 104동 1~6호라인 : 지하 1~3층 연결
 - * 102동 7~10호라인, 103동 7~10호라인, 104동 7~8호라인 : 지하 1~2층 연결
 - * 102동 11~14호라인, 103동 11~14호라인, 104동 9~12호라인 : 지하 2층 연결
- 본 아파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 설치대상임,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1,2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이며 택배차량은 지하1,2층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 주차대수는 세대당 1.2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지하1층 주차장 램프 및 101~104동 주변 인접한 위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였으며, 총52개소(급속충전 시설 7개소, 완속충전시설 45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단지내 아파트 주차대수는 지하1층 153대, 지하2층 400대, 지하3층 167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2대이며, 722대 중 23대는 장애인주차장(지하주차장 1층 11대, 지하주차장 2층 11대, 근린생활시설 1대)으로 계획하였으며, 장애인주차장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므로 계약전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계	-	-	-	646대	22대	52대	1대	1대	-	-	-	-
722대 (1.2대)	지상	-	-	-	-	-	-	1대	1대	-	-	-	-
	지하1층	-	-	-	90대	11대	52대	-	-	-	-	-	-
	지하2층	-	-	-	389대	11대	-	-	-	-	-	-	-
	지하3층	-	-	-	167대	-	-	-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지하1층,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마다 위치와 개소가 다르게 설치됩니다. 또한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세대별 단독이용이 불가합니다.
- 계절창고의 결로방지를 위한 환기설비(팬, 제습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 천장은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열교환기실, 지하주차장 환풍,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지상2층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주민공동시설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창호 외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 1,2,3층은 여름 등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바닥 및 벽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 분진,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진동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 이용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인근주변에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위치하여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의 위탁 운영이 있을 수 있으며, 협의 내용에 따라 운영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신발장, 책장), 다함께돌봄센터(주방기구, 신발장), 피트니스센터(신발장, 락커장), 주민카페(주방기구, 실내놀이터(신발장) 등에 일부 가구류는 설치되나, 내부 비품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청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설 설치 여부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로부터의 지하주차장 차량진출입구는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열교환기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들의 전후측면 가까이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되는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동별 상이하므로 사용거리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적용하여 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관리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필로티, 경사램프 등의 설치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등은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활터전 담장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종류, 수종,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등) 계획을 표현한 각종 인쇄물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제어팬,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 주차장 환기팬, 유인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재대 전개구간에는 차폐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저층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지하주차장 및 지상층 환기구 주변에 소음, 진동, 먼지, 바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증계장치는 지하2층 2개소(102동 환풍, 103동 환풍)와 옥상 4개소(102동, 103동 2개소, 104동)에, 옥외 안테나는 옥상 4개소(102동, 103동 2개소, 104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에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탑지붕층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 102동 인접한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 102동 인접한 지하층에는 열교환기실이 설치되며 펌프류의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DA의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는 102동과 상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특고압인입은 상가 인근 한전지중개폐기에서 102동 인근 전기실까지 지중으로 매설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실이 세대에 인접한 경우 장비가동으로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냉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 예정입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벽용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 예정입니다. 단, 최하층 및 직상층 세대는 급수, 급탕 계량기에 동파방지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각 세대 전기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아파트 전동 지붕층에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됨,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벽체 태양광발전 집광판으로 인해 일부세대 눈부심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얼굴인식 공동현관기(로비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정보수집에 동의한 세대에 한해서 비접촉 얼굴인식 원패스시스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지내 설치된 공용 무선AP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개소별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에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의 교통량에 따라 소음발생으로 생활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보행자도로) 간 레벨차이로 인한 단차발생 시 아파트 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등으로 마감할 예정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부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의 옥외 시설물은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동 하부 또는 인근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는 소음, 일조, 조망 등에 관련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또는 조경석 쌓기 등이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 조경시공계획(조경, 식재, 포장, 시설물 등 일체) 및 추진 일정 등은 추후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종류, 재료, 형태, 색상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에 전후측면 가까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치변경은 불가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생활자원보관소의 디자인 및 위치를 각 세대의 단순 미관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화장실,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경량벽체는 칸막이 구조로, 인접한 거실 또는 침실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 욕실에 PD가 위치하여 욕실 및 인접한 실에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세탁실) 내에 우수선흡통이 설치되어 강우 시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는 봉투바름(테두리바름)으로 시공되어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니므로 보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램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오피스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을 선택한 세대와 미선택 세대의 우물천장 모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하며, 수납공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여단미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평상 시 실외기 통풍구 루버 밀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 타입 실외기실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는 바닥타일보다 높게 설치되므로 실외기실 이용간 불편할 수 있음. 피난구가 설치된 직하층에는 피난상황 발생 시 피난사다리 전개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층세대 및 직하부에 필로티 또는 부대시설 등이 위치한 최하층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법상 일부 최하층세대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개폐방향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재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체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종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뒤편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주방가구(옵션 아일랜드식탁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옵션 중 아일랜드식탁은 고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 및 아일랜드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귀, 수급·생산불능 및 제조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거실 시각경보기 등은 전시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일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5B, 55C 타입의 발코니는 비정형 발코니이므로 세탁기와 건조기 병행설치가 불가하거나 건조기 문 개방 시 상호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옥탑에 적용성이 있는 하이브리드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옥탑 주위에 가스누출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 설치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주방자동소화장치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합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천장, 주방가구 또는 PD에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실외기실에는 드레인 및 우수용,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릅니다.
- 세대 옥실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증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자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매립배관 및 박스는 거실,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단,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매립배관 및 박스는 설치되지 않음)
- 세대 환기를 위한 세대환기설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므로 환기유니트 본체와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옥실 배기는 당해층직배기 방식이 적용되므로 창문개방 시 인접세대의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우천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 세탁실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의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건조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옥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일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옥실천장에 설치되는 배기장치는 타일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의 방화문에 차압측정홀이 설치됩니다.
-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에 실외기실이 위치하며, 사용 시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진동, 온·냉풍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은 일반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만 설치됩니다.
- 세대에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 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으로 방범서비스, (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쿡탑열원 차단, 거실 및 침실1,2,알파룸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분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현관창고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쿡탑열원 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외부날씨 - 온도, 미세먼지정보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에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음)
- 세대(전기)분전반은 알파룸 도어 후면 벽체에 매립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통신)단자함은 현관창고에 매립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의 직부형 주조명기구는 직접조명(하부면 조명)과 연출조명(측면) 일체형 제품이며, 분리제어가 불가능합니다.(옵션선택시에도 분리제어 불가)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 발코니 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단, 실외기실에는 벽부형 조명이 설치됨)
- 발코니(다용도실) 천장에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사용자 주변 시설물(세탁기, 건조기, 문 등)과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다용도실) 사이즈에 따라 자동빨래건조대 슬라이딩봉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다용도실)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만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을 열지 않고 실외기 가동 시 작동 오류 및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될 수 있어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진동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시스템에어컨(옵션)은 무선 리모콘을 통해 작동되며 세대 내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쿡탑(옵션품목 포함)과 가스차단밸브 및 배관사이 공간이 협소해서 대용량 냄비사용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약세사리와 전기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는 상호 간섭이 발생할 경우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내환기시스템 자동운전시 공기질 측정을 위한 센서는 침실1에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 관련 특이사항
 - ※ ㉠ (주방특화) 선택시 상부장 하부조명과 ㉡ (드레스룸) 선택시 화장대의 가구일체형 조명의 전원 스위치는 별도로 가구에 설치되며, 일괄소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드레스룸) 선택시에는 시스템선반 하부조명 접원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전원연결로 인해 선반 이동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 ㉣ (조명특화) 조명기구특화 옵션에 포함된 신발장 하부조명은 현관센서와 연동되어 현관등기구와 같이 동작하며, 별도의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조명특화) 선택시 침실 디밍·색온도 제어는 직부형 주조명기구에 적용이 되며, 공간확장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조명특화) 거실 및 침실의 직부형 주조명기구는 직접조명(하부면 조명)과 연출조명(측면) 일체형 제품이며, 분리제어가 불가능(옵션선택시에도 불가능)하고, 디밍·색온도 조절기능이 직접조명(하부면조명)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학교 설립 시기

급별	학교설립 계획	학생배치 계획	비고
초등학교	없음	하중초등학교	- 시흥하중 A1블록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하중초등학교이나,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구)은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시흥교육지원청 학생 배치 담당부서로 사전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연성중학교 (연성중학교)	

- 본 지구의 학생 배치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흥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어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전시관,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입주일(잔금 완납하여 열쇠를 수령하여 입주절차를 완료한 날)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로서 최초 입주시의 주택관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LH)가 선정하고, 추후 분양세대가 과반수 이상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기관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LH)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관리기관 후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LH), 임차인대표회의(구성시)가 상호 협의하여 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양 계약자 및 임차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에너지 성능	★★★★★
환경 관련 등급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 환경 등급	단지내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고효율LED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	적용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사이버)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52,080,191
	방음시설 설치비		-
	기간이자		2,684,152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45,741
	계		54,810,084
건축비	공사비	토공사	2,897,107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50,088
		우·오수공사	308,285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9,678
		도로포장공사	152,622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2,996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3,188,064	
			부대시설공사	144,529	
			계	6,763,369	
			공동가설공사	1,482,512	
			가시설물공사	3,008,490	
			지정 및 기초공사	1,368,756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17,960,774	
			용접공사	-	
			조적공사	1,235,321	
			미장공사	2,273,267	
			단열공사	2,058,084	
			방수·방습공사	1,440,573	
			목공사	2,206,272	
			가구공사	376,494	
			금속공사	440,519	
			지붕 및 흡통공사	127,725	
			창호공사	3,534,770	
			유리공사	1,150,743	
			타일공사	1,170,906	
			돌공사	2,044,263	
			도장공사	1,499,644	
			도배공사	591,229	
			수장공사	835,770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464,944	
			계	45,271,055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708,605
			급탕설비공사	546,090	
			오배수설비공사	3,905,360	
			위생기구설비공사	1,565,237	
			난방설비공사	1,882,932	
			가스설비공사	536,894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42,121	
			공조설비공사	1,857,756	
			계	11,044,994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5,583,980
			정보통신공사	2,783,561	
			소방설비공사	6,765,837	
			승강기공사	1,456,801	
			계	16,590,179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093,469
			이윤	5,803,192	
			계	8,896,661	
간접비	설계비	1,711,866			
감리비	1,189,240				
일반분양시설 경비	116,225				
분담금 및 부담금	573,904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2,302,578				
계	5,893,813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9,011,425			
합계		168,281,582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나. (주)대한감정평가법인
58,583,064천원	58,336,572천원	58,829,557천원

9. 분양주택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방음시설 설치비	-
	기간이자	3,019,302
	기타비용	51,453
	계	3,070,755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2,531,815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771,089	
	바닥충격음저감주택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2,314,709
		에어컨냉매배관	768,244
		초고속통신특등급	335,833
		기계환기설비	718,310
	친환경주택건설비용	1,061,412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127,820
		기타비용	109,174
	지하주차장충고증가추가비용	267,500	
	설계비	154,051	
	감리비	4,152,812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공사비	-
		암석지반공사비	531,462
흙막이및차수벽공사비		4,899,028	
지하공사특수공법		-	
안전관리비	486,901		
사업승인부가조건 가산비	1,769,551		
계	20,999,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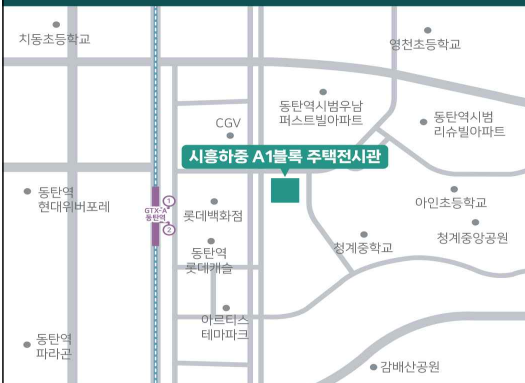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시흥하중 A1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35-82-14276)	이수건설 주식회사(206-81-40254)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124-81-4022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서영티이씨)

11.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

LH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주 소 : www.lhj-a1.co.kr

■ 위치안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519-1

■ 오시는길 : 롯데백화점 동탄점 맞은편

- 열차 : 동탄역 하차 후 도보 8분
- 버스 : 포스코더샵 · 롯데캐슬에서 하차
 - (일반버스) 71, 99
 - (마을버스) 17, 19-1, 19-3, 709-1, 81
 - (광역 · 직행) 6001, 6003, 6008, 7200, 8302, M4130, M4434

■ 운영기간 :

(전시관 관람) 2026.05.08.(금) ~ 2026.05.17.(일) ※ 주말(토·일요일) 운영

(서류접수기간) 2026.06.18.(목) ~ 2026.06.21.(일) ※ 주말(토·일요일) 운영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6.09.30.(수)

■ 운영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시흥하중 A1블록 주택전시관 : 031-8077-7989 (10:00 ~ 17:00)

